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4
----------	---------

제출연월일: 2024년 4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추가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가목을 신설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가목, 나목에서 가목, 나목, 다목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별도첨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를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를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p> <p>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p> <p>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사 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과태료</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제34조 제4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나.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 설>					가.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4항제2호	100	200	300	나.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 반 사 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과태료</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r> <td>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body> </table>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 설>																																															
가.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4항제2호	100	200	300																																											
나.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성명	보건소 의약과장 장진수 (담당: 의료기술6급 전영민)
연락처	02-2600-595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4-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6급	성명	최윤선
입안주무부서	의약과	조치일		2024. 3. 1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이 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추가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강서009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의약과		
	담당자명	전영민	전화번호	02-2600-595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03월 15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03월 19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3월 29일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